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51
----------	-------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김 윤 · 김남근 · 정태호
서영석 · 남인순 · 김원이
김 현 · 이수진 · 전진숙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 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의료적 욕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시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여 의료 필요도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

런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심신상태”를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의 갈음) ① 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갈음한 경우 공단은 그 조사 및 판정 결과 등을 조사를 위탁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권장 서비스 의견 제시) 등급판정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심의·판정 시 신청인의 심신상태, 의료 필요도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30일”을 “22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일”을 “22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장기요양급여”를 “장기요양급여 등”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로서 갱신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52조제1항 중 “판정 등”을 “판정, 권장 서비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5인”을 “11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을 “위원 5인, 의사 2인 이상을 포함한 의사 또는 한의사 3인 이상”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요청) ① 공단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 및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수행 및 통합지원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 정보, 조사·종합 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및 통합지원 서비스 연

계 결과 등 통합지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작성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제공 및 요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갱신 결과 제2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받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대상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

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가 종전의 장기요양등급보다 낮아지거나 장기요양인정 점수 미달로 탈락하게 되는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5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제19조에 따른 등급별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4조(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일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 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 ----- ----- ----- ----- -----, ----- ----- ----- ----- ----- -----.
1. 신청인의 <u>심신상태</u>	1. ----- <u>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u>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4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의 같음)</u> ① 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제14조

<신 설>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
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
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
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
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갈음
한 경우 공단은 그 조사 및 판
정 결과 등을 조사를 위탁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권장 서비스 의견 제
시) 등급판정위원회는 제15조
에 따라 심의·판정 시 신청인
의 심신상태, 의료 필요도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
청인에게 적합한 권장 서비스
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①

-----22일(토
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
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

• ② (생략)

③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
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
신설>

22일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장기요양급여 등-----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제
19조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호
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로서
 갱신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⑤ (생략)

<신설>

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
----판정, 권장 서비스 등----

-----.

② (현행과 같음)

③ -----
-----11인-----
-----.

④ -----

-----.

-----위원 5인, 의사 2인 이상을 포함한 의사 또는 한의사 3인 이상
인-----.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통합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요청) ① 공단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통합지원 연계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
보 및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
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수행
및 통합지원 연계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신청 정보, 조사·
종합 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
획 및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
결과 등 통합지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작성하거나 보
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제공 및 요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